

# 수출입 정보

2019.03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
-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
- 수출입업체 편의제공 등을 위한 담보제도 개선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 02. 수출입물류 동향

- 한·미 세탁기 분쟁, 드디어 막 내리나?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268개로 세계 2위
- 영국은 이제 EU 역외국? 그럼 통관은 어떻게?"

## 03. FTA 동향

- 중소기업 대상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 올해 첫 RCEP(동아시아 경제통합) 공식협상 열려

## 04. 최신 품목분류

- Coconut Water의 품목분류
- Salad Spinner의 품목분류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제123조)
  - (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즉시반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으로 신속통관 지원
  - \*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현황) 일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구 결과 패소 환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
  -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간 공급되는 가스
- 통관시스템 의한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현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의 물품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허용
  - (개선) **AEO업체의 물품 외에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심사 확대 적용**
- SOFA협정 적용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 (현황)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수입신고시 미군 통관장교 및 계약 장교가 서명한 원본 증명서 제출
  - (개선) 원본 증명서 외에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도 제출 허용**
-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제33조)
  - (현황) 서류처리는 당일처리가 원칙임에도 신속통관을 위해 3 근무시간 이내 처리를 별도 규정
  - (개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형식적인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당일처리 원칙으로 환원**
- 입항전신고 시점을 관세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
  - (현황) "입항전신고"의 입항시점을 하선(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입항전 하선신고 허용으로 하선신고 시점이 불명확
  - (개선) 입항전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신고 시점으로 하고,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 \* 관세법 제243조제2항에 수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항된 후'로 규정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
  - (현황)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여부만 전산으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선)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별소비세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란 분리 신고(1. 일반사항)
  - (현황) 개별소비세 물품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빈번 발생
  - (개선) 동일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
-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수입자 신고 명확화
  - (현황) 해외직구시 개인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동일하게 신고
  -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 및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신고시 기재
  - (현황) 운송주선인과 성분신고시 선택 기재사항임
  - (개선) **운송주선인을 필수 기재**토록 명확화하고, **화학물질인 경우 모델규격란에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토록 개선

\* 현재 선택사항인 모델·규격, 성분에 대해서는 품명, 세번별 신고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고시개정 후 필수기재 사항으로 운영 예정.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간이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간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 (신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10단위 기준 82개 품목 선정
    -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관련 면세한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출입 업체 편의 제공, 자금부담 완화, 관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한 담보제도 개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9.3.1 시행)

-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로 구분되어 있는 담보 면제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 하고, **담보 면제 유효기간 폐지**(제2조 2호 신설, 제7조 1 개정 등)
- 담보제공 생략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의무 폐지 - 사전확인신청 또는 건 별 담보제공 생략 요건 입증 중 선택 /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을 신청한 경우 담보 제공요건도 법인 기준으로 확인
- 채권 확보와 직접 관련없는 법규준수도 기준을 담보 제공요건에서 삭제하고, 체납 발생 소지가 있고 적용 실적이 미미한 저 신용자 담보 면제 기준 정비(제3조 1 신설 등)
- 최근 2년동안 연간 5억원 이상 수출입 업체는 신용 등급이 없거나 낮더라도 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생략자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되, AEO 등 성실 업체는 제외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재심사 처리기간 변경 및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 AEO 종합심사, 관세조사, 원산지 검증 등 심사 진행중인 특정물품은 세관의견을 반영하여 세관질의로 처리토록 반려 규정 신설
- 기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한 경우에 **반려 가능 규정 신설**
-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한이 30일로 동일하였으나, **재심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변경**하여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은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10단위 결정과정의 불필요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 02. 수출입물류 동향

### “한·미 세탁기 분쟁, 드디어 막 내리나?”

### “분쟁 관련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중재판정 결과 발표”

2016년부터 계속된 한·미 세탁기 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9일 WTO가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전했다.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 수준으로 판정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앞으로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268개로 세계 2위”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 2월 기준 부산항에 기항하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노선은 주당 268개로 지난해보다 5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의 데이터를 활용, 분석한 것으로 기존과 달리 선사 간 공동운항 및 선복임차 등을 동일노선으로 통합, 산정하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했다.

부산항 기항 선사들의 주당 노선 수는 2015년 257개에서 2016년 268개, 2017년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253개로 감소했으나 2018년 263개, 올해는 268개로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다.

주변항만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항만이 333개, 상해 256개, 선전 229개, 홍콩 204개, 닝보 170개로 부산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정기노선이 있어 글로벌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외국적 선사의 노선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적선사는 129개로 5개, 외국적선사의 노선은 127개로 3개가 증가했으며 국적·외국적 선사가 공동운영하는 노선은 12개로 3개가 줄었다.

지역별 노선을 보면 일본이 73개로 가장 많고 동남아 50개, 중국 46개, 북미 41개, 유럽 16개, 남미 12개, 러시아 8개, 인도 7개, 대양주 7개, 중동 6개, 아프리카 2개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본노선은 6개, 중국노선은 4개, 남미노선은 2개, 대양주, 중동, 인도 노선은 각 1개씩 늘어난 반면, 동남아 지역과 북미지역 노선은 선사간 서비스 통합 및 조정 등으로 각 8개, 2개씩 줄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지역 노선이 부산항 전체 서비스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해운동맹의 서비스가 집중되는 동서항로와 인근해 항로의 연계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미, 중동, 대양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남북항로의 노선도 지난해보다 5개가 늘어난 34개로 남북항로상 부산항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02. 수출입물류 동향

### “영국은 이제 EU 역외국? 그럼 통관은 어떻게?”

### “KOTRA,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과도적 간소화 절차’ 분석”

노딜 브렉시트 시 EU 역외국이 되는 영국이 그에 따른 세부 대응책을 제시했다.

KOTRA 런던무역관은 영국 국세청(HMRC)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에 있던 기업이 EU로 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통관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상품의 국경 통과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도적 간소화 절차 (TSP)’를 마련했다고 2월 21일 전했다.

현재 영국은 EU로부터 상품 교역 시 역내 교역으로써 수출입신고 및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 역내가 아닌 EU와 EU 역외국(영국)과의 교역이 되므로 세관절차 준수 및 관세 납부 등의 제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TSP(Transitional Simplified Procedures)를 이용하면 표준물품은 수입상품이 통관될 때 상품이 영국에 도착한 날짜와 시간, 상품 설명과 상품 코드, 매입서(가능한 경우)나 매출송장 번호, 세관 신고금액, 시리얼 넘버(적합한 상품에 한정), 배송 세부 정보, 공급업체 이메일 주소만 기입해 통관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절차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 다음 상품 통관을 먼저 마치고 영국으로 반입 가능하며, 보충신고는 해당 품목이 영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4번째 영업일 이내에 마치면 수입 신고가 완료된다.

비용 납부는 기업이 통관을 먼저 마친 후 발생한 관세 및 관련 비용을 상품이 도착한 그 다음달 15일에 영국 국세청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면 된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수입품목 혹은 동식물, 술·담배와 같은 통제품은 표준물품 통관 절차에 더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영국으로 수입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품이 수입통관될 때에 면허 등 관련된 모든 서류를 동반해야 한다.

KOTRA 관계자는 “영국에 기반을 둔 우리 기업이 EU로부터 영국 내로 상품 수입 시 TSP를 이용해 최소 1년간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영국정부의 고지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TSP는 올 3월 29일 영국이 EU로 부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 4월까지 최소 1년간 유지될 계획이다.

###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영국과 FTA 추진 방안 협의”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 열어. FTA 위한 국내절차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31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한·영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영 통상 장관회담에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이행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한·영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가 체결·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산업부는 그간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는 등 한·영 FTA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 03. FTA 동향

## “중소기업 대상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 “FTA부터 통관·환급까지”

<관세청,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18명 배치. 종합컨설팅 제공>

올해도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공익관세사 118명이 전국을 누비며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수출 관련 종합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 118명은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찾아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FTA뿐만 아니라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엔 공익관세사 82명이 430개 기업에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FTA 활용 수출상담, 교육, 통관 애로사항문의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상공회의소, 지자체 등 관련 기업과 협업체 FTA활용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첫 RCEP(동아시아 경제통합) 공식협상 열려”

### “산업부, ‘제25차 RCEP 공식 협상’ 참석”

지난해부터 최종 타결을 위해 달려온 RCEP가 올해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제25차 공식협상이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타결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뿐 아니라 ASEAN·인도 등 新 남방정책 주요 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각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상 회의에서 RCEP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해 첫 공식협상인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각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 했다.



# 04. 최신 품목분류

## “Coconut Water의 품목분류”

### “제2009호의 과실주스인가? 제2202호의 음료인가?”



#### <물품설명>

- 코코넛 워터에 미량의 비타민C를 혼합한 미백색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 소매포장(내용량 250ml)
- 설탕(0.05%)을 첨가한 그린 코코넛워터(코코넛 주스)
- 용도 : 음용
- 결정세번 : 제2009.89-1090호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된다.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 소주스와 과실 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해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착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해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코코넛 워터는 기존에 제2202.99-9000호에 분류됐으나, WCO 제58차 HS 위원회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돼 '그 밖의 한 가지 과실로 된 주스'로 봐 **제2009.89-1090호**로 **정정 분류**했다.



#### <물품설명>

- 코코넛 주스(80%), 물, 설탕, 구연산, Potassium Metabisulphite로 구성된 조제품(음료용, 400 ml 캔에 소매포장)
- 용도 : 음용
- 결정세번 : 제2202.90-9000호

○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위의 물품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은 일반적인 음료수로 희석한 코코넛 워터로 구성된 것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는 비알콜성 음료이며, 만장일치로 **제2202호(소호 제2202.90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 04. 최신 품목분류

## “Salad spinner(손잡이 야채 탈수기)의 품목분류”



###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탈수 통(외부통과 내부 바스켓으로 구성)과 수동식 장치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덮개로 구성된 것으로 덮개부분의 손잡이를 돌리면 회전에 의한 원심 탈수 기능을 갖는 야채를 수동식으로 탈수시키는 장치  
[전체 규격 : 직경 약 16cm, 높이 약 14.5cm]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의 제16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탈수 통과 수동식 장치가 내장된 덮개로 구성되어 원심력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로 가정에서 야채를 탈수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19-9000호에 분류함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